유형자산(서버 및 비품) 매매계약서

매도인(갑) 이용규

경기도 수원시 당수동 한라비발디 2단지 203호 1203호

매수인(을) (주)인포솔루션

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송호1길 87(영우빌딩, 4F)

위 당사자들은 아래 매매목적물에 관하여, (갑)이 2016. 4.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허가를 득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입찰 결과 낙찰자로 선정되어 아래 표시 유형자산을 매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(매매목적물)

이 건 계약에 의한 매매목적물은 (갑)이 관리하고 있는 다음의 유형자산(서버 및 비품)이다.

순번	품목	실사수량	비고
1	ERP서버세트	1세트	DL580 2P 12C(2.66) 32G MEM. 300 HDD*2. HBA DUAL PORT
2	빔프로젝트(PPT용 범용프로젝트)	1	
3	스위치허브	2	
4	중역용 목재책상	1	
5	중역용 의자	1	
6	회의용 목재탁자	1	
7	목재 중회의실 탁자세트	1세트	
8	회의용 의자	16	
9	사무용 책상(서랍장 포함)	12	
10	사무용 의자	12	
11	파티션 높이 1500mm기준	15	
12	문서함	1	
13	보드판	1	





14	회의용 사출의자	10	
15	냉장고(소)	1	

제2조 (매매대금 및 지급방법)

가. 매매대금 : 금 13,000,000 원

(을)은 이 건 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아래 나.항의 지급 기한까지 (갑)의 임치금 보관 계좌(신한은행 606-11-005220 예금주 : 이용규)에 온라인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.

나. 매매대금 지급 방법 및 기한

구 분	매매대금	지급기한	비고
계약금	원		
잔 금	13,000,000원	2016년 04월 30일	
합 계	13,000,000원		

제3조 (물건의 인도)

(을)이 위 제2조 나.항에서 정한 매매대금 지급을 전부 이행한 후 (갑)은 현실인 도가 가능한 이 건 매매목적물의 점유를 (을)에게 이전함으로써 이 건 계약에 의한 (갑)의 의무가 전부 이행된 것으로 간주한다.

제4조 (계약해제 등)

가. (을)이 이 건 계약에 의한 대금의 지급 등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(갑)은 그 선택에 따라 연 12%의 지연손해금과 함께 (을)에게 계약 이행을 청구하거나, 이 건 계약을 해제하고 위 해제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 (갑)이





(을)의 책임 있는 사정에 터잡아 이 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위 매매대금의 10%에 상당하는 금원은 위약금으로 (갑)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.

제5조 (하자담보책임 등)

(을)은 이 건 계약체결 전 이 건 매매목적물과 관련된 일체의 법적, 사실적 관계를 조사하고 이 건 계약 체결에 임하는 것이므로 여하한 경우에도 물건의 수량 및 하자, 권리의 하자 등에 관하여 (갑)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기로 한다(부제소 합의 포함).

제6조 (정지조건 등)

가. 이 건 계약에 터 잡은 소송상 청구의 관할은 (갑) 혹은 (울) 관할소재지 법 원으로 합의한다.

2016.04 . 18 .

양도인(갑) 이용규(68101-1162818)



양수인(을) (주)인포솔루션(134-87-35399)

